

2-2-2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학과와 승인인원) 교원자격검정령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의 승인을 받은 학과와 승인인원은【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직과정 이수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1학년 재학생으로서 학년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별표 2】를 교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3., 2008.12.2., 2023.12.6.>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에서 성적(70%), 면접(30%), 인·적성(Pass/Fail) 기준으로 당해 학년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6.11.27, 2007.11.23., 2008.12.2., 2021.12.7., 2023.4.4.>

② 성적은 1학년 2학기까지의 실점평균을 적용하되 총점(성적, 면접)이 같은 경우 1순위 면접점수, 2순위 실점평균, 3순위 평점평균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5.4.14., 2023.4.4.>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계획 및 선발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직부로 이의신청서【별표 2-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직부는 신청학생에게 개인점수를 공람하고 해당 이의신청 사항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제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별표 3, 4】에 작성하여 2학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7.11.23>

제6조(교직과정 과목과 이수학점) ① 교직과정은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한다.

②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연도별 교직과목과 학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11.23., 2008.12.2., 2015.4.14.>

③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이상을 포함하여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 과목은 표시과목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중 4주간 실시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실시한다.<개정 2015.4.14>

②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수의 인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다음 각 항의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입학한 연도의 합격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4.14>

- ①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여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공과목은 본이수영역 7과목(21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총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성적기준은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졸업전체 평균성적 80점 이상,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입학한 자는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는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되어야 한다.
- ④ 적성 및 인성검사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⑤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9.><개정 2021.12.7.>
- ⑦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7.>
- ⑧ 성범죄이력 관련 결격사유를 확인한다.<신설 2021.12.7.>
- ⑨ 마약류 등 중독 여부를 확인한다.<신설 2021.12.7.>

제9조(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최종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학기말 소정의 기간내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험에 필요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별표 6】
2. 성적증명서 1부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교원양성위원회)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2.7.]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6조, 제8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 제6항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졸업 잔여 학기가 2학기인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잔여학기가 1학기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직과정 설치학과와 승인인원

학 부	전 공	자격종별	승인인원	표시과목
간호학부	간호학	보건교사 (2급)	11명 (입학정원의 10%)	-

년 일 일

예수대학교 교직부장 귀하

【별표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

예수대학교

학 부	전 공	주·야 구 분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입 학 정 원	승 인 인 원	선 발 인 원	비 고

[illegible]

【별표 5】<개정 2020. 9. 9.>

교 직 과 목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대 학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교육 (보건교사 제외)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실무실습)	교육실습	2 학 점 (4주)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대 학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4학점 이상
합계	총 22학점	

3. 2013학년도 ~ 2016학년도 입학자

영역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대학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4학점 이상
합계	총 22학점	

4.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영역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대학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4학점 이상
합계	총 22학점	

【별표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 학 (교) 대 학 원	과 (전 공)	[] 졸업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나.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라.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